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69호
2.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외 10명
3. 발의일자 : 2017. 10. 20.
4. 회부일자 : 2017. 10. 24.

## II . 제안이유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III . 주요내용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2.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조례안 참고)
3. 기 타 :
  - 입법예고(2017. 10. 27. ~ 11. 3.)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10월 20일 김생환 의원 외 10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2169호로 발의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학생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경향과 조례안의 제정 취지

- 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함)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남발되었다는 역사적 반성 아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인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해야 함을 방향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sup>

1)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9일 현장실습에서 숨진 제주 지역 특성화고 3학년 학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소자의 근로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각종 위험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sup>2)</sup>
-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야 했던 서약서를 폐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sup>3)</sup> 지난 12월 4일에는 최근 전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sup>4)</sup>

**[표]2015~2017년 노동인권교육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sup>5)</sup>	2017년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15,990	33,930	79,300
노동인권교사직무연수	2,838	5,365	12,890
노동인권교육교안교재개발			46,500
노동인권상담 및컨설팅		4,473	6,100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직무연수 <sup>6)</sup> (구 직업교육과 노동인권 연수)		20,000	10,000
<b>총계</b>	<b>18,828</b>	<b>63,768</b>	<b>154,790</b>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한겨레, '맛집의 잔혹한 10대 노동', 2017.11.7; 한겨레, '열여덟번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제주 현장실습생의 죽음', 2017.11.22; 한겨레, '10대 현장실습생들 '잔혹사', 기업·정부·학교가 키웠다', 2017.11.22; SBS, '현장실습이 값싼 청소년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 2017.11.22. 참고.

3)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2017.9.30 참고.

4)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15일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점검', 2017.12.4. 참고.

5) 2016년도 노동인권관련 예산은 별도 세목이 편성되지 못하고 [학생생활지도지원]-[인권교육활성화] 관련 예산에서 집행(2016. 3. 10.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임용 후 사업추진)

6)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직무연수는 진로직업교육과 편성 예산임.

- 그러나 교육청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계약 위반 소지, 최저임금 준수 위반 소지, 과도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계없는 잡무 투입, 낮은 만족도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노동인권교육 실시의 의무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의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노동인권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표준교안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sup>7)</sup> 제7조에서는 교육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와 제9조는 노동인권교육의 의무시수와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각 조문별 내용과 구성 체계면에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교육청도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민주시민교육과-15723, 2017.11.17).

7)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교육자료로서 「연소근로자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를 제작한바 있음.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